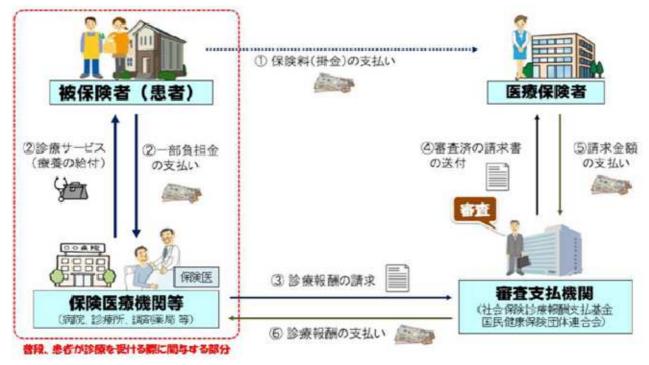
# 국민건강보험개요

- 1.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  -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공적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. 일본의 공적의료보험은 크게 나누어 회사 등에 근무하는 사람이 가입하는 '건강보험'과 그 외의 사람이 가입하는 '국민건강보험'이 있습니다.
  -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의료비 부담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가입자가 돈을 나누어 내어, 질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때 의료비로 충당하는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 제도입니다.



※참고문헌: https://www.mhlw.go.jp/stf/newpage\_51604.html

「후생노동성 재일 외국인용 마이넘버 건강보험증 안내 」

#### (위 일러스트의 번역)

- ① 피보험자(환자)가 의료보험자(각시/정/촌사무소)에 보험료(세금)를 납부한다.
- ② 보험의료기관등[보험의](병원,진료소등)이 피보험자(환자)에게 진료서비스(요양급여)를 제공한다.
- ②'피보험자(환자)가 보험의료기관 등에 진료 서비스를 받은 부분의 일부 부담금을 지불한다.
- ③ 보험의료기관 등이 심사지급기관(국민건강보험단체연합회 등)에 진료비를 청구한다.
- ④ 심사지급기관이 의료보험자에게 심사 완료된 청구서를 송부한다.
- ⑤ 의료보험자가 심사지급기관에 청구 금액을 지급한다.
- ⑥ 심사지급기관이 보험의료기관 등에 진료비를 지급한다.

2. 거주하고 있는 시,정의 국민건강보험 담당과에서 가입 수속을 하시기 바랍니다.

### (1) 국민건강보험가입 신고 (14일 이내)

- 주민표가 작성된 사람으로 3개월 이상의 체류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공적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.
- 체류기간이 3 개월 이하인 사람이라도 3 개월 이상의 재직증명서, 또는 재학증명서를 제시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.
- 퇴직 등으로 인해 근무처의 건강보험을 탈퇴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.
- 마이넘버 건강보험증 이용 등록을 이미 하신 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. (자세한 내용은 3을 참고해주십시오.)

### (2) 국민건강보험탈퇴 신고 (14일 이내)

- 귀국 또는 다른 지방으로 전출, 근무처의 건강보험에 가입, 생활보호비를 수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시, 정의 국민건강보험 담당과로 탈퇴를 신고하고,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증(보험증)을 반환해 주십시오.
- 3. 보험진료를 받을 때에는 「마이넘버 보험증」 또는 「자격확인서」가 필요합니다.

#### (1) 마이넘버 보험증 이란

- 마이넘버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, 마이넘버 카드의 건강보험증 이용 등록을 함으로써 「마이넘버 보험증」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마이넘버 보험증의 보유자가 자신의 피보험자 자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,
  가입 시나 본인 부담 비율이 변경될 때에는 「자격 정보 안내문」이 교부됩니다.

## (2) 자격 확인서란

• 마이넘버 카드를 발급 받지 않은 사람, 혹은 마이넘버 카드를 발급받았지만 보험증 이용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 등에게는 「자격확인서」가 교부됩니다.

### (3) 마이넘버 보험증 또는 자격확인서를 분실한 경우

• 마이넘버 보험증 또는 자격 확인서를 분실한 경우에는, 본인에 의한 교부 신청이 필요합니다. 반드시 거주지 시·정촌 국민건강보험 담당과에 연락해 주십시오.

마이넘버 종합 무료 상담 전화

# TEL 0120-95-0178

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URL 또는 QR 코드를 참고해 주십시오.

https://www.mhlw.go.jp/stf/newpage\_08277.html



4.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다음과 같은 급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#### (1) 요양의 급부

보험의료기관등 창구에서 마이넘버 보험증 또는 자격확인서를 제시하면 아래 항목에 대한 의료비는 본인부담 30%로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원칙적으로 미취학 아동이나 고령층은 본인부담 비율이 경감됩니다.

- ⇒ 「급부·부담일람표」 A 1
  -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
  - 치료에 필요한 약이나 주사
  - 입원비용

#### (2) 고액요양비의 지급

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
⇒「급부·부담일람표」A 2

### (3) 출산육아일시금의 지급

출산을 한 경우에는 출산육아일시금이 지급됩니다.

⇒ 「급부·부담일람표」A 3

#### (4) 장례비의 지급

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비가 지급됩니다.

⇒ 「급부・부담일람표」 A 4

- 5.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(세금) 지불 의무가 발생합니다.
- 국민건강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험료(세금)을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. 납부하는 것을 잊었거나, 납부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체납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의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, 본인이 보험진료를 받을 수 없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
- 보험료(세금)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재원입니다. 정해진 날짜까지 반드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- ◎ 부득이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년 이상 보험료(세금)을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증을 반환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런 경우 자격증명서가 교부되어, 보험의료기관의 창구에서 우선 의료비를 전액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.

### 보험료 (세금) 의 계산방법

의료보험분, 후기고령자※ 지원분, 개호보험분을 각기 부담능력과 수익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합계액을 보험료(세금)로 정하고 있습니다.

- ⇒ 「급부·부담일람표」 B 1
- ①응능(應能)비율 (부담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.)
  - ·소득비율액 → 각 세대의 전년 소득에 따라 계산
  - ·자산비율액 → 각 세대의 자산에 따라 계산
- ②응익(應益)비율 (소득이 낮은 분에게는 경감조치가 있습니다.) ⇒「급부・부담일람표」B 2
- 피보험자 균등비율액 → 소득,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자 수에 따라 계산
- 세대별 평등비율액 → 각 세대별로 균일하게 계산
  - (注) 보험료(세금)의 계산방법은 시,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거주하고 있는 시,정의 국민건강보험 담당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고령자 중에서도 75세 이상의 고령자를 지칭함.
- 6. 교통사고도 국민건강보험이 도와드립니다.
- 교통사고 등 제 3 자로부터 상해를 입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•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한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가해자(제 3 자)에게청구합니다.

~교통사고로 국민건강보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담당과에 신고하여 주십시오~

# 7. 40 세이상인 분은 1 년에 한 번 특정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• 특정건강진단검사와 특정보건지도는 여러분의 건강장수와 증가하는 의료비 억제를 목적으로 암, 심장병, 뇌졸중 등의 생활습관병을 예방하기 위해 헤이세이 20 년도(2008 년)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.

특정건강진단검사 본인부담액 ⇒ 「급부・부담일람표」 B 3

• 특정건강진단검사 결과 생활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분에게는 특정보건지도 안내를 보내드립니다.

# 8. 후기고령자의료제도

- 헤이세이 20 년도(2008 년)부터 75 세 이상인 분은 후기고령자의료제도에 가입합니다.
- 후기고령자의료제도의 본인부담 비율은 소득 등에 따라 판정합니다.
- 9. 이 팜플렛은 국민건강보험의 개요를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거주하고 있는 시,정의 국민건강보험 담당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# 【연락처】

시, 정 이름	静岡市 SHIZUOKASHI	
국민건강보험 담당과명 전화번호	AOI HOKEN NENKIN / 葵区役所 SURUGA HOKEN NENKIN / 駿河区役所 SHIMIZU HOKEN NENKIN / 清水区役所	054-221-1070 054-287-8621 054-354-2141

# 국민건강보

# 급부•부담일람표 (2025.10.1 현재)

# A 급부

A 1 본인 부담금의 비율

구 분		비 율
6세 미만	20%	
6세 이상 70세 미만	30%	
	20%	30% 에 해당하지 않는 자
70 세 이상 75 세 미만	30%	은퇴이전 수준의 소득자 (아래 A 2 ② 참조)

## A 2 고액 요양비의 본인부담금 한도액(월 금액)

## ①70세 미만

구 분		국민보험세대 전체
	기초공제후의 총 소득금액이 901만 엔을 초과하는 세대	252,600엔 + (의료비 - 842,000)× 1 %
상위소득자	기초공제후의 총 소득금액이 600만 엔을 초과하고 901만엔 이하의 세 대	167,400엔 + (의료비 - 558,000)× 1 %
일 반	기초공제후의 총 소득금액이 210만 엔을 초과하고 600만엔 이하의 세 대	80,100엔 + (의료비 - 267,000) ×1 %
	기초공제후의 총 소득금액이 210만 엔 이하의 세대	57,600엔
저소득자	주민세비과세 세대	35,400엔

# ②70세 이상 75세 미만

	구	분	개인단위 (외래진료만해당)	세대단위 (입원포함)
현역만해당		과세소득 690만엔 이상	252,600엔 + (의료비 - 842,000)×1%	
		과세소득 380만엔 이상	167,400엔 + (의료비 - 558,000)×1%	

		과세소득 145만엔 이상	80,100엔+ (의료	비 – 267,000) ×1 %
일 반	일반 과세소득 145만엔 미만		18,000엔	57,600엔
기고드기	Ⅱ시,정,촌민세비과세 세대		8,000엔	24,600엔
저소득자 <del> </del> I	I 시,	정,촌민세비과세 세대 ※ 1	8,000엔	15,000엔

※ 1 시,정,촌민세비과세 세대 중 소득이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세대.

#### A 3 출산육아 일시금의 지급액

48 만 8 천엔

(산부인과 의료보상제도에 가입한 의료기관에서 분만한 경우 50 만엔)

### A 4 장례비의 지급액

5 만엔

A5 교통사고 등을 당했을 때

교통사고 등 제 3 자(가해자)의 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고 건강보험(국민건강보험·후기고령자의료·개호보험등)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, 각 보험자에게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### B 부담

### B 1 보험료 (세금) 의 액수

	①응능(應能)비율		②응익(應益)비율	
	소득비율	자산비율	피보험자 균등비율	세대별 평등비율
의료보험분	6.08%	<b>-</b> %	24,900 엔	20,900 엔
후기고령자※1지원분	2.57%	<b>-</b> %	10,500 엔	7,900 엔
간병보험분	2.33%	<b>-</b> %	18,400 엔	- 엔

※부과 한도액이란, 보험료(세금) 부담액의 상한을 말하며, 일정 소득 이상인 사람은 그 이상 소득이 높아져도 보험료(세금)액은 동일하게 되는 한도액입니다. 현재 현 내상한액은 109 만엔(의료 66 만엔·후기 고령자 지원금 26 만엔·요양 17 만엔)입니다.

### B 2 경감 비율

○저소득자에 대한 경감제도

경감비율	경감기준
70%경감	총소득금액 (세대주+피보험자) ≦43 만엔※
50%경감	총소득금액 (세대주+피보험자) ≦43 만엔※+30 만 5 천엔×피보험자수

20%경감

총소득금액 (세대주+피보험자) ≦43 만엔※+56 만엔×피보험자수

- ※급여·연금 소득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43 만엔 + 10 만엔 × (급여·연금 소득자 수-1)
- ○미취학 아동에 대한 경감 제도 6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이 있는 경우, 미취학 아동의 균등할액이 50%경감됩니다.
- ○비자발적 실업자에 대한 경감 제도 근무처 사정(해고·파산 등)으로 퇴직한 64 세 이하의 사람은, 퇴직일 다음날이 속한 달부터 다음연도 말까지 해당자의 급여소득을 70% 경감됩니다.
- ○출산 전후 기간에 대한 경감 제도 출산 예정월(또는 출산월)의 출산 전후 기간(단태아 4 개월, 다태아 6 개월)에 해당하는 출산 피보험자의 소득할액과 균등할액이 면제됩니다.
- B 3 특정건강진단검사의 본인부담금액

0 엔

인터넷 버전